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76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정성국 · 서천호 · 조경태
김 건 · 김예지 · 서지영
김용태 · 조승환 · 최형두
강선영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의 수행 등 공적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오고 있음.

그런데 교원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사의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는 보수의 손실 없이 고충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와의 형평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교육의 전문성·공공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원단체는”을 “교원단체(이하 “교원단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교원의 파견) ① 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하여 교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소속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원단체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 협의) ①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u>교원단체</u> 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 · 협의한다.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 · 협의) ① ----- ----- <u>교원단체</u> (이하 “교원단체”라 한다)는----- ----- ----- ----- ----- ----- -.
②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교원의 파견) ① 교원단체는 전문성 향상 등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대하여 교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소속 교원을 교원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라 교원단체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 · 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u>

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